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11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김동아 · 허성무 · 김우영
장종태 · 김영호 · 임호선
이재관 · 김 윤 · 강준현
최혁진 · 양부남 · 박희승
조계원 · 김문수 · 박지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을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 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 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 다)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 출, 배송 등을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